

# 옛 大學의 發達史(上)；高麗 이전\*

—우리 옛 大學의 發達史와 風俗誌(1)—

丁 淳 瞞

(嶺南大 教育學科)

## 우리 옛 大學의 發達史와 風俗誌

### 1. 옛 大學의 發達史(上)；高麗 이전

- 1) 고구려의 太學
  - 2) 백제의 博士 제도
  - 3) 신라의 國學
  - 4) 고려의 國子監
2. 옛 大學의 發達史(下)；朝鮮時代
- 1) 國立大學：成均館
  - 2) 民立大學：精舍와 書院
3. 옛 大學의 風俗誌
- 1) 成均館(學令／齋會／捲堂·空館·儒疏／圓點／闕戲／謁廟…)
  - 2) 書院(講／講儀／講會／儒會／評價／師長／居接·夏課…)

### 1. 머리글

필자는 이 연재에서 우리나라 옛 大學의 發達史와 그 風俗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기술하고자 한다. 동양의 대학이 다만 학위 수여권이 없다는 점으로 서양의 대학과 구별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해방 이후 설립된 신식 대학의 뿌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전통의 뿌리를 서구 대학에 대고 있으나 우리의 傳統 古典 大學의 淵源을 외면한 채 한국 대학교육의 이념이나 방법의 원리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구의 중세 대학이 12세기 무렵에 이루어졌다면 우리 옛 대학의 기원은 그보다 8세기나 앞선 先進大學이다. 이른바 光復이 역사와 전통의 단절 극복을 급선포로 하였다면 오늘의 대학인은 이를 다시 광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콘스탄틴의 Cathage나 이태리의 Salerno, Bologna, 그리고 Ox-Cam의 대학 발달사에 소상하듯이 우리는 太學과 國子監, 그리고 成均館의 내력과 정신에 대하여도 알아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의 대학이고간에 대학의 발생은 모든 교육 기관에 앞서 창설된다. 이것은 대학이 정치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의 역사는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의 직절한 거울이었다. 따라서 한 시대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하자면 대학이야말로 그 시대의 축도이다. 더구나 대학을 감돌고 있는 지적 분위기, 곧 土風은 한 나라의 元氣가 깃드

\* 우리 옛 大學의 發達史와 風俗誌(丁淳睦)는 3회에 걸쳐 연재됨.

는 곳이고 數化의 원류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상하 천 오백 년간의 우리나라 대학 발달사를 간략히 소묘하고 결들여 그곳에 담긴 정신적 풍속도를 그려 보고자 한다.

## 2. 옛 大學의 發達史(上)

### 1) 고구려의 太學

고구려의 교육에 관한 문헌(기록) 자료는 太學과 扁堂에 관한 몇 줄뿐이다. 太學의 자료는 국내 사료(三國史記 등)에 있고 扁堂은 중국 측문헌(舊唐書 등)에 실려 있다. 태학은 국가 교육기관이고 경당은 민간 교육기관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자는 儒學敎育의 최고 학부로서 귀족교육을 담당하였으며, 후자는 유학 경전 교육을 포함하는 무술교육을 병행한 민간의 文武學塾이다. 우리는 위의 두 교육기관의 단편적인 기록을 통하여 고구려 교육의 모습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太學의 설립·운영 사실을 통하여 당시 고구려의 유학교육의 수준과 지배 계급의 학문적 기반을 짐작할 수 있다. 先秦儒學의 경전이 교육용 교재로 民·官 교육에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은 고구려의 전국 초기부터 한문자로서의 문화 생활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민간인 학교로서 경당이론 거리마다 세워져서 독서와 習射를 하였다는 기록은 고구려인의 썩썩한 기상이 교육을 통하여 도야되었음을 알려준다. 실제로 고구려는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국가 건설을 이룩하였으며 고도의 문화를 지녔던 중국 대륙과 자웅을 가릴 만한 강대국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數育力量의 결과로 보여진다.

고구려는 한문자가 들어오기 전에 독자적인 문자 생활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國初始用文字 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三國史記 28, 高句麗 8, 영양왕 11년)라는 기록이라든가 A.D. 373년에 律令을 반포하였다는 기사 등을 미루어 보아 太學과 같은 국립대학을 설치·운영 할 국가적 역량은 이미 충분하였으리라고 본다. 이처럼 태학과 경당이라는 제도적 교육을 가짐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대 교육사는 비형식 교육을 청산하게 되어 명실이 맞는 교육의 나라로 세계

교육사에 편입되기에 이르렀는데 太學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세계에서 두번째가 된다. 그리고 扁堂敎育은 민중 사학의 濫觴으로서 밖으로는 秦·漢과 같은 세계 제국과 겨루고 안으로는 3국이 鼎立하는 시대적 요청에서 상무적인 청소년의 수련 교육기관으로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문무교육은 신라의 화랑 교육제도의 발생 배경과도 일치된다.

고구려의 太學은 소수림왕 2년(A.D. 372)에 세워졌다. ‘立太學敎子弟(太學을 세워子弟를 교육하였다)’라는 여섯 자가 전부이다. 따라서 태학의 제도나 교과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직접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나 이 제도가 중국의 대학 제도와 비슷한 고급 관리의 양성 기관이고 국가의 최고 학부였으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고구려의 태학의 성격과 내용을 알아보자면 중국 대학의 성격과 내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문물 제도는 周代에 거의 확립되었다. 周의 중앙 정부는 天·地·春·夏·秋·冬의 六官을 두어 국정을 분담하였는데, 그 정치의 원리가 〈禮〉이다. 교육은 地官(司徒)이 관장하였으며 國都에 大學과 小學을 두고 지방에는 鄉學을 두었다. 周代의 國都에는 5개의 大學이 있었는데 東의 대학은 東膠 또는 東序라고 하여 〈舞〉를 가르치고, 西의 대학은 曾宗 또는 右學이라 하여 〈禮〉를 가르치고, 南의 대학은 成均이라 하여 〈樂〉을 가르치고, 北의 대학을 上庠 또는 虞庠이라 하여 〈書〉를 가르치고, 중앙의 대학은 裨雍이라 하여 〈儀〉를 가르쳤다.

대학생은 天子·公卿·大夫·元士의 자제 및 지방에서 선출된 秀才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三德(正直·剛克·柔克)·六藝(禮·樂·射·御·書·數)·六儀(祭禮·賓客·朝廷·喪紀·軍旅·車馬)·六行(孝·友·睦·謹·任·恤) 등 기초 교양교육을 어느 정도 배운 뒤에 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의 수업 연한은 9년이었으며 대개 8세에 小學에 입학하고 15세경에 大學에 입학하였다.

周代의 대학은 일종의 왕실의 특수 교육기관의 성격이 짙었으나 漢나라 때에 이르러 대학은 천하에 널리 개방되어 국가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 무제는 B.C. 124년에 박사 제도를 설치

하였는데 이는 董仲舒의 헌책에 의한 것이다. 漢의 대학은 당나라 때에 國子監의 ‘六學’으로 세분(國子學·大學·四門學·律學·書學·算學) 되었는데 이는 신분 제도의 분화에 따라 입학 자격이 제한되었다.

고구려의 太學이 어떠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은 무렵의 扁堂教育의 내용과 비교하거나 신라 國學의 교육 내용을 참고하면 대개 五經(詩·書·易·禮記·春秋)·三史(史記·漢書·後漢書)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太學의 교수는 博士였다. 한 나라 무제 때에 董仲舒가 올린 賢良對策에 의하면, “선비를 기르는 곳은 대학보다 나은 곳이 없다. 대학은 어진 선비가 관여할 곳이고 教化의 근본이다. 대학을 일으켜서 훌륭한 스승을 두고 천하의 선비를 길리야 한다(養士莫大乎大學 大學賢士之所關教化之本原也…… 興大學置明師 以養天下之士)”는 그의 獻策에 따라 무제는 B.C. 136년(元朔 5년)에丞相 公孫弘으로 하여금 五經博士를 두어 50여 명의 제자들에게 經學을 연찬토록 하였다. 이것이 대학의 교수인 ‘博士’ 제도의 기원인데, 고구려 영양왕 11년에 李文眞으로 하여금 太學博士에 임명하였다는 기록은 한 나라의 五經博士와 같은 學官制度가 고구려에서도 확실히 시행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한편 扁堂 교육은 舊唐書·新唐書(東夷傳 高麗條)에 기록이 전하는 고구려의 민간 교육기관이다. 이를 太學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지만, 그 교육 내용이나 수준은 대학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풍속이 서적을 사랑하여 연세 있는 집이나 가난한 백성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거리에 큰 집을 지어 이를 扁堂이라 하였는데, 결혼하기 전의 자제들이 여기서 밤낮으로 책을 읽고 활쏘기도 하였으며 여기서 사용된 교재는 五經과 三史 및 三國志·孫盛晉의 春秋·玉篇·字統·字林이나 文選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처럼 太學과 扁堂의 기록 연도인 A.D. 372년은 곧 前秦 8년으로서 진나라가 燕나라를 정벌하여 고구려와 이웃이던 연나라의 太傅 蔡容이 고구려에 쫓겨온 지 3년 밖에 안 되는 해이

다. 秦의 세력과 고구려가 맞닥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고구려의 국민교육의 태세의 일단을 짐작하게 된다. 그리고 太學이 세워진 소수 릴왕 2년 6월에는 秦王 符堅이 중 順道와 佛經·佛像을 보낸 데 대한 儒臣의 史評(三國史記·東國通鑑)에 의하면 당시의 귀족 자제들에게는 유학 경전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도 함께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전반적인 학풍이 儒佛兼學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중국은 한나라가 망한 지 벼여 년이 지난 때였다. 漢末의 농민 폭동으로 유교 사상의 통치권을 반대하고 일반 백성은 經學에 반대하여 남방의 도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을 믿기 시작하였다. 이때 秦王 부견은 매달 한번씩 大學에 나아가 교육을 장려하였는데 이때의 교육은 유학은 물론 道·佛·양교의 사상이 혼합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竹林七賢과 같은 老莊學派가 있었는가 하면 頑之推, 傅玄 등과 같은 崇儒學派도 생기게 되었다. 고구려의 太學 역시 이러한 국제적 문화 교류의 영향에 의하여 불경으로 자제를 가르쳤기 때문에 뒷날 儒臣의 史評은 “雖曰立學 而無作成之效”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대학교육은 儒佛混用의 교육과 경당과 같은 고유한 전통 교육이 시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 2) 백제의 대학(博士)

백제 교육에 대한 기록 역시 단 몇 줄의 博士制度에 관한 것이 있을 뿐이다.

고구려가 태학을 세운 지 2년 뒤인 A.D. 374년에 ‘博士 高興’의 기록이 있으므로 이 무렵에 대학이 생겼으리라 보여진다. 그러나 ‘博士’는 대학의 學官일 수도 있고 일반 학예직일 수도 있으므로 박사가 있었다고 하여 대학이 반드시 있었으리라는 보장은 힘들다. 신라가 문무왕 때 까지 화랑도 교육이 절정에 이르러 대학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은 외국식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을 뜻한다. 따라서 3국 초기의 대학은 필수적인 교육 제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백제사에 제도적인 대학교육이 없었다면 국내 교육은 물론 이웃 나라 일본에 文字·學藝·技術을 전수시키고 또 제1급의 학자와 전문가를 교대로 파견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古爾王

제의 관직을 보면, 제11품이 文督이고 제12품이 武督인데, 이들은 각기 文武敎育을 담당하는 벼슬아치였다.

三國史記 近肖古王 29년 條에 “百濟開國以來未有文字 以高興爲博士 始有書記”라 하였으나 이는 〈文字〉를 갖지 아니 하였던 것이 아니라 역사 기록을 하지 아니 하였다는 뜻이다. ‘始有書記’에서 ‘書記’를 책 이름으로 볼 수도 있고 ‘記’를 적는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역사 기록의 사실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또 「日本書記」에 나오듯이 王仁 ‘博士’가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한 때가 A.D. 285년이니 ‘博士 高興’보다 90년 전의 일이다. 그 뒤로 武寧王 때 (A.D. 513) 五經博士(段楊爾)를 보냈고 聖王 때는 五經博士(王柳貴), 醫博士(王有凌陥), 易博士(王道良)를 일본에 보냈으며 그밖에도 농업 기술·織造術 및 天文·地理·音樂·美術·工藝 등 문화 전반에 걸쳐 백제의 〈博士〉는 일본의 스승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飛鳥·推古文化’는 백제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백제의 博士制度는 梁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백제는 4세기 후반부터 5세기에 이르기까지 學官은 모두 博士라고 簡稱하였다. 그러다가 6세기 이후부터 박사는 五經博士와 專業博士로 나뉘어지고 이를 일본에 교대제로 파견하였던 것이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4聖王 19년 條에 “王遣使入梁 朝貢兼表請毛詩博士”라 하였는데, 이때 毛詩博士를 요청한 것은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직까지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梁나라의 學制가 백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나 大學設立 여부는 전하지 않는다. 7세기 이후 백제의 문물과 교육 제도는 독자적으로 일본 고대 교육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經學에서 專業(醫·算·曆·鑪盤·互博士) 교육으로 점차 그 수용 양상이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 3) 신라의 대학(國學)

신라의 儒學 교육이 행해진 것은 오래된 듯하다. 그러나 고구려나 백제보다 대륙 문화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麗·濟 2국을 통하여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만큼 그 문화의 수입은 삼국 가운데서 가장 늦다.

제27대 선덕왕 9년(A.D. 640)에 비로소 자제를 당나라에 파견하여 그 나라의 國學에 입학시켰다는 기록(三國史記 卷 8, 新羅本紀 5) 이전에는 학교 교육에 관한 기록이 없다.

신라는 중국 문화권에서 뒤지기는 하였으나 삼국 통일 이전까지는 화랑도로써 교육의 전반을 대치하였다. 삼국 통일을 완수한 제30대 神文王 2년(682) 6월에 비로소 國學을 세워 禮部에 속하게 하였다.

신라의 대학 제도는 신문왕 2년 설립 이후 점차 발달하여 제33대 성덕왕 16년(717)에는 孔子·十哲, 七十二 弟子의 畵像을 당나라로부터 가져와 翰院의 예를 행하였고 제35대 경덕왕 때에는 국학의 명칭을 太學監으로 잠시 고쳤다가 다음 왕인 혜공왕 때에는 다시 국학이라 하였다.

국학의 직제는 그 장으로 卽 1명이 있고, 그 아래 박사(정원 없음)·助教(정원 없음)·大舍(2명)·史(4명)를 두었다.

신라의 국학은 당나라 國子監의 체제를 모방한 것이다. 唐은 隋의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를 계승하고 확장하였다. 국가감의 감독 아태 일련의 국립대학을 國都에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儒學大學은 唐代에 와서 교육 행정권을 모두 국가감이 맡도록 교육 체제가 확립되었다.

신라 국학의 입학 자격 및 수업 연한을 보면, 학생의 연령은 15세에서 30세까지 입학을 허락하였으며 입학자의 신분은 大舍(17등급 가운데 12급)로부터 無位者까지였고 수업 연한은 9년으로 하였다. 국학의 교육 기능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유학 사상을 연구·보급하는 학문 전당으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유학 이념에 입각한 관리 양성의 기능이다. 처음에는 전자를 위한 교육 기능에 힘썼으나 차차 관리 배출을 위한 기능으로 바꾸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처음 국학에서는 한문학을 습득하여 당나라와의 외교 문서를 작성할 능력을 배양하거나 군주권의 과시를 위한 비문·제작에 중점을 두다가 통치를 위한 관원 양성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교육 내용 역시 유교 경전 위주였고 論語와 孝經은 필수 과목이었다. 신라 국학의 課程은

다음 세 가지이다.

- ① 論語, 孝經, 禮記, 周易
- ② 論語, 孝經, 左傳, 毛詩, 春秋
- ③ 論語, 孝經, 尚書, 文選

이는 당나라 국자감의 교육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은 당에서는「老子」를, 신라에서는「文選」을 과하는 정도이다. 그들이老子를 택한 것은 당나라 황실이 노자와 同姓이므로 그를 우대하기 위함이었고, 신라에서 文選을 과한 것은 외교 문서 작성의 능력을 기르기 위함인 듯하다.

그 뒤 통일 이후, 관리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는 종래의 비형식 교육으로서의 화랑 교육제도나 학자 양성으로서의 국학교육으로서는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제33대 원성왕 4년(788)에는 일종의 관리 양성의 특수 교육반인 ‘讀書三品出身科’를 설치하였다(三國史記 卷38, 雜志卷 7, 職官上).

독서삼품과는 다음과 같이 4급으로 나뉜다.

“독서하는 학생은 三品 出身으로서 春秋左氏傳이나 禮記, 文選을 읽고 그 뜻이 통하고 아울러 論語와 孝經에 밝은 사람을 上으로 하고, 曲禮·論語·孝經을 읽은 사람은 中으로 하고, 曲禮·孝經을 읽은 사람은 下로 한다. 만약 五經과 三史 및 諸子百家를 아울러 능통한 사람은 超擢하여 등용한다.”

따라서 신라의 국학 제도는 차츰 학벌과 시험 본위의 교육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중앙의 國學과 동시에 지방에 있어서도 鄉學이라는 국가 교육 기관이 있었다, ‘時各州安置助教’라 하여 국학의 박사보다 한 등급이 낮은 助教를 임명하여 교육하였다.

당시의 六頭品 이하의 관리 임용은 대개 독서 삼품과 출신자(文籍出身)와 해외 유학생(遣唐留學生)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때 국내파와 해외파 간의 알력이 커던 것 같다.

원성왕 5년(789)에 子玉을 楊根縣의 小守執事로 임명하였는데, 毛肖라는 사람이 子玉이 ‘文籍出身’이 아니라고 하여 그 임용을 반대하였다. 이에 侍中들이 의논하여 子玉은 비록 독서 삼품과 출신이 아니나 그는 견당 유학생이므로 임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전의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三國史記, 新羅本紀十, 元聖王 5年條).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하여 六頭品 이하의 文籍 출신의 사회적 진출과 해외 유학생의 대가 귀국으로 관리직이 충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과거법이 시행되지 않을 때이기에 “自此用人之法, 一以文籍出身爲貴”(東史綱目五, 上) 하였다는 표현과 같이 8세기 말경의 신라 대학은 관리 양성의 권위 있는 기관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國學과 독서삼품과의 입학은 신라 골품제의 신분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육두품의 진취적인 지식 계층들은 자신들의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였다.

“신라의 사람 쓰는 방도는 오로지 골품만을 논하니 그들이 아니고서는 비록 끈 재주와 뛰어난 공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뛰어넘지 못한다. 중국으로 가서 품은 재주를 마음껏 펴서 비상한 공을 세우고 영화로운 길을 스스로 이루고자 한다”(三國史記 卷47, 列傳·薛圓頭條).

이리하여 신라 하대에는 육두품의 자제들이 신분상의 제한을 벗고자 많은 수가 당나라의 국자감에 유학하였고, 長慶初(820~)에 金雲慶이 처음으로 신라의 寶貢으로 급제한 뒤로 天祐末(906~)까지 급제한 사람이 58인이나 되었다는 것이다(崔灝, 「拙藁百千」卷下). 이처럼 신라는 640년 이후 계속 유학생을 선발하여 당나라에 파견하였는데 유학 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 정도였다. 이 기간이 차면 귀국하도록 하고 그 뒤를 이어 다른 학생을 보냈다. 유학생이 많을 때는 백여 명에 달했다. 이것은 문성왕 2년(840)에 유학생과 質子 등 105인이 한꺼번에 귀국하였다는 기록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이들 유학생의 경비는 은화로 3백 냥을 본국에서 부담하였고 의식비는 외국 유학생의 편리를 돋는 그곳 鴻臚寺에서 공급하였다.

이때 당나라의 국자감은 學舍가 1천 2백 칸, 학생이 1만 3천 2백여 명이어서 수도 長安은 실로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의 국학이 어느 정도 盛唐의 문물을 수용하였으며 대학교육 발전에 자극과 영향을 주었는지는 미상이다. 이들 견당 유학생 가운데 文名

을中外에 날린 사람은 최치원, 김가기, 박인범, 김악, 최승우, 최인곤(후에 언위로 고침) 등이 있었으나 그들이 귀국하였을 때는 신라가 이미 쇠락의 길로 접어들 때였던 것이다. 그리고 907년에 당나라는 마침내 멸망하게 되고 최치원을 대표로 하는 해외 유학생들은 귀국하였으나 포부를 펴지 못하고 새로운 세력에 귀의하거나(崔承祐는 견훤에게, 崔彥撝는 왕건에게) 최치원처럼 “鶴林黃葉 鶴嶺青松”의 추파를 던지면서 사라져 갔던 것이다. 해외 유학생의 역사 의식의 문제는 이처럼 천여 년 시간을 뛰어넘는 교훈을 오늘에 다시 전하는 것이다.

#### 4) 고려의 대학(國子監)

##### 가) 설립과 입학 자격

고려의 제도학교 설치는 태조 13년에 이루어졌다. 이는 고려 태조의 對西京經營(北方政策)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왕권 강화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高麗史 卷 1, 太祖 1, “幸西京創置學校”). 그뒤 4대 光宗에 의한 과거제도의 확립은 고려의 지배 체제를 유학 이념으로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이는 다음 임금 成宗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

성종은 국가의 지배 체제를 유학 이념으로 정착시키고 수도에 최고 학부인 國子監의 교육을 정비·확립하고 지방 학교의 교육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였다. 그는 教育詔書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高麗史 卷 3, 成宗 2년 3월 戊寅條, 5년 9월 己丑條, 9년 9월 丙子條), 이에는 鄉貢薦士들의 國子肄業制度(留京習業)를 시행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그리고 성종 11년 12월의 教書에서 “有司는勝地를 가려서 書齋와 學舍를 세우고 田莊을 주어 學糧에 충당할 것이며 또 國子監을 創建하라” 하였는데, 이때 과연 국자감이 비로소 創立(建)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국자감의 설립 연대는 성종 11년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 무렵의 국자감은 향리 자제를 중앙 귀족화 시켜서 在地豪族의 세력을 견제 또는 약화시키려는 통치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고려 사회가 차츰 귀족화·閥閱化되면서 국자감의 교

육적 기능도 차츰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예종 때 재상인 邵臺輔가 국자감을 혁파하자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국자감 교육의 무력성을 나타낸 주장이다. 그리고 文宗代의 私學의 발달은 국자감 교육 기능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귀족 자제를 위한 門蔭制度는 고려 사회가 業績主義보다는 賜屬主義를 지향하는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뜻한다.

예종 즉위년(1106)의 「制」에 ‘三京八牧’에 通判 이상과 知州事·縣令으로文科 출신자는 아울러 勾管하라 하였으나 士類들은 이를 즐겨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대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받드는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예종의 강한 교육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벌 귀족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니, 이는 건국 이래 계속된 王權 대 獄權간의 권력 장악을 위한 갈등 현상이 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仁宗朝에 式目都監을 설치하고 국자감의 ‘祥定學式’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仁宗 원년 12월). 이에 의하면 國子監은 國子學·大學·四門學의 儒學大學과 律學·書學·算學의 技能大學을 설치한 종합대학의 성격이며 이는 唐宋代의 교육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고려의 국자감 교육은 이때 李資謙·拓俊京 등 귀족 세력의 연이은 발호 아래, 나약한 임금이었던 인종의 귀족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그들 혼구 문벌의 교육 독점장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때 국자감의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 〈國子學〉

- ① 文武官 3品 이상의 자손
- ② 獻官 2品으로 縣公 이상의 子
- ③ 京官 4品으로 3品 이상의 獻封者의 子

##### 〈太學〉

- ① 文武官 5品 이상의 자손
- ② 文武官 正·從 3品의 종손
- ③ 獻官 3品 이상으로 有封者의 子

##### 〈四門學〉

- ① 獻官 3品 이상의 無封者의 子
  - ② 獻官 4品 이상의 有封者의 子
  - ③ 文武官 7品 이상의 子
- 〈律·書·算學 및 州縣學〉
- ① 文武官 8品 이상의 子

## ② 庶人

③ 文武官 7品 이상의 자로 원하는 자

한편 國子監의 입학의 금지 규정은 雜路에 관  
련되는 자 및 工·商·樂 등에 登籍된 賤業 종  
사자의 자손, 大小功親을 범하여 嫁娶한 자와  
家道不正者の 자손, 惡逆을 범하고 귀향한 자의  
자손, 賤鄉 部曲人の 자손 등이다.

### 나) 교육과정과 수업 연한

儒學大學(國子學·太學·四門學)은 論語·孝  
經(1년), 尚書·公羊·穀梁(각 2년 반), 周易·  
毛詩·周禮·儀禮(각 2년), 禮記·左傳(각 3  
년) 함께 8년 반이나 된다. 그러나 과거의 응  
시 자격이 6년이었으므로 국자감의 수학 연한은  
6~7년 정도라고 보면 타당할 것이다.

신라 國學의 독서 연한이 9년이라든가, 조선  
조 성균관의 그것이 四點節目의 신축이 있었으  
며 또 과거와의 관련에서 수학 연한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였던 것으로 보아 위의 각 과정의  
이수 기간은 독서 기간의 극대치일 뿐이다.

技術大學(律·書·算學)은 각기 博士를 두어  
律令·八書·算術을 掌敎한다고 하였을 따름이  
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이나 수업 연한은 명시하  
지 않고 있다. 문종 17년의 「判文」에 “儒生在  
監九年 律生六年”이라고 나타난 것이 참고가 된  
다.

### 다) 성적 평가

國子監의 성적 평가는 ‘月書’(월말 평가)와  
‘季考’(기말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通考分數 또는 藝行分數라고 한다. 이때의  
‘分數’는 국자감의 수학 기간과 연계되어 14분  
이상을 받아야 科場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는 宋나라 太學의 평가 방식을 원용한 것이다. 즉  
학생들의 성적을 上·中·下로 3등분하고 〈上〉  
은 2차례의 시험이 모두 上이 되었을 때의 평  
가이며, 한번은 上이고 한번은 中인 경우는 〈中〉  
으로, 한번이라도 下가 있을 경우에는 나머지가  
비록 上이라도 〈下〉로 평가한다. 이같은 평가를  
다시 종합하여 등급을 정하여 分數하는데, 1등  
은 두지 않고 2등 1명에게는 3분을 주고, 2  
등 2명에게는 2.5분을 주었으며, 3등 1명은  
2분, 다음 5명은 1.5분, 그 다음 9명에게는  
1.3분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1분씩 준다. 不通

인 자는 퇴학시켰다. 이는 일종의 능력별 졸업  
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같은 行藝  
分數制를 적용하였다면 학업 우수자는 四季(季  
春(3月), 季夏(6月), 季秋(9月), 季冬(12月))  
에 모두 ‘上’을 받는 경우, 1년에 12分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 1년 3개월 이내에 14분을 취  
득하여 國子監을 졸업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  
된다. 그러므로 靖宗·睿宗代의 「判文」에 나타  
난 “國子監三年在學”이라는 이론적 근거가 타당  
하게 된다.

### 라) 교육 재정

成宗代에 국자감이 터전을 잡은 뒤로 文宗代  
는 고려 문화의 황금 시대라 이를 만큼 教學과  
文運이 아울러 융창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국학보다는 私學이 교육을 압도하여 官學의 본  
산인 국자감은 위축 상태를 면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거란(契丹)의 침입 이후로는 국자감의  
재정난은 더욱 심하였고 教官은 실력이 없고 諸  
生은 성의가 없어 廢業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이는 문종 17년(1063) 8월의 「制」에서 國子監  
復興策을 강구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  
러나 국자감 교육의 不振相은 벗어나지 못하였  
다. 이에 예종은 국자감의 재정적 기반을 세우  
고자 14년(1119)에 養賢庫를 세웠으나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계  
속되다가 忠烈王 30년(1304)에 安珦의 건의로  
國學의 育英財團인 贈學錢을 설치하고, 충선왕  
원년(1309)에도 양현고에 은 50근을 내리고 藝  
文館으로 하여금 郡縣의 茂才者를 불러 訓導로  
임하는 등 교학의 진흥책을 강구하였으나, 이미  
“國都·州縣에 이르기까지 모든 教基가 廢墮하  
지 않은 곳이 없고”(李穀 〈寧海府新作小學記〉),  
“諸郡을 두루 살펴봄에廟學이 무너지고 생도 가  
운데 학업에 게으른 자가 많았다”(李穀 〈金海府  
鄉校 水軒記〉)는 실정이었다. 安珦의 贈學錢 건  
의는 국가 교육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나  
온 고식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高麗史(권 105, 列傳 18) 安珦傳에 의하면,  
안珦은 학교가 날로 쇠퇴함을 근심하여 兩府에  
의논하기를 “재상의 직무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  
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지금 양현고가 텅비  
어 養士할 수 없으니 6품 이상은 각각 銀 한斤

을 내게 하고 7품 이하는 布를 차등 있게 내되 이를 養賢庫의 기금으로 하고 그 利息을 취하여 섭학전을 삼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왕이 내탕금을 내어 협찬하고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마) 「高麗圖經」에 나타난 고려 國子監의 모습

다음은 「高麗圖經」을 지은(1123) 중국 사신 徐兢의 눈에 비친 당시 국자감의 모습이다.

“國子監은 이전에 남쪽 會賓門 안에 있었다. 앞에는 대문이 있는데 國子監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중앙에 宣聖殿을 세우고 양쪽 행랑에 기숙사를 세워 諸生들을 거처하게 하였다. 殿의 규모는 극히 큼 있는데 지금은 禮賢坊으로 옮겼다. 이로써 학생들이 많이 불어나고 그 제도가 둠시 사치스럽다.”

위 禮賢坊의 국자감은 성종 11년에 창건한 舊址이다. 그뒤 이곳은 宣宗 때에 이미 퇴락하여 宣宗 6년에 국자감의 수리를 위하여 順天館으로 이전하였다. 이곳이 곧 徐兢이 본 곳이다. 국자감이 會賓門 안에서 다시 예현방으로 수리 복귀한 것은 예종 8~9년경이다. 「高麗史」(예종 9년 8월 乙卯)에 “왕이 國學에 나아가 先聖 先師에게 찬을 올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바) 부속 학교; 東西學堂·五部學堂

‘四學’이란 조선 시대의 이름이고 고려에서는 ‘東西學堂’이므로 ‘二學’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東西學堂은 곧 국자감의 부속 학교라고 할 수 있으나 오늘의 중등교육기관은 아니다. 이 제도는 麗末까지 존속되었으니 李穡의 國學中興을 위한 전의문(高麗史 卷 115, 列傳 28, 李穡傳)에 “국가가 안으로 成均館·十二徒·東西學堂을 세우고, 밖으로 州郡에 이르기까지 각기 학교가 있어서 규모가 宏遠하고 節目도 치밀하다”고 한 바 있다.

東西學堂에는 教授를 두고 禮는 成均館에서, 樂은 典儀寺에서, 兵은 軍候所에서, 律은 典法寺, 字學은 典校寺, 醫學은 典醫寺, 風水陰陽은 書雲觀, 吏學은 司譯院에서 각기 수업하였다고 하였으므로 7品 이하의 자제를 위한 기술 학교의 성격이 짙다. 국자감의 3개의 기술대학(律·書·算)의 예비 학교일 가능성이 아닌가 한다.

24 대 원종 2년(1261) 3월에는 “東西學堂에 別監을 보내서 教導하였다”(高麗史 卷 74, 學校考) 하였으며, 공양왕 때에 鄭夢周가 成均館의 大司成이 되어 성리학을 전작시키면서 ‘五部學堂’을 세워 儒學을 진흥시켰다(高麗史 117, 列傳 鄭夢周傳)는 기록을 보아서는 開京의 東西 2學堂은 東西南北中의 五部學堂으로 확장된 듯하다. 이같은 〈學堂〉은 지방의 鄉校와 같은 位格인 듯하지만 향교와는 달리 享祀機能이 없는 순수한 講學 기관이었다.

사) 教授職

高麗史 百官志에 나타난 國子監의 職制는 다음과 같다.

- 〈判事〉; 文宗 때까지 兼帶官職이었으나, 예종 때 국자감의 최고 책임자로 확정되면서 大司成(從 3品)으로 확정되었다.
- 〈祭酒: 醴주〉; 문종 때는 실질적인 교육 행정의 책임자(從 3品)였으나, 예종 때 判事が 惠管하면서 부책임자(正 4品)로 격하되었다. 충렬왕 때 元制의 도입으로 大司成이 폐지되면서 다시 典酒(從 3品)로 승격되면서 성균관의 책임자가 된 적도 있으나 얼마되지 않아 大司成이 復置되면서 그 지위는 이전으로降格되었다. 공민왕 18년에 司成으로 개칭되었다.
- 〈司業〉; 성종 때는 국자감의 최고 책임자였다. 예종 이후 학사 전반을 다루는 사무처장격이 되었다. 司業은 따로 樂正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 〈博士〉; 教授職으로 正 7品이다. 國子博士·四門博士가 있으나 공민왕 11년에 성균관으로 개칭되면서 成均博士로 되어 麗末까지 계속되었다.
- 〈助教〉; 國子助教, 太學助教, 四門助教는 성종 이후에 一般行政官職인 學正·學錄·直學·學諭가 되고 助教의 직관은 없어졌다. 助教란 오늘의 助教授이다.
- 〈明經·律·書·算博士〉; 從 9品의 技術大學 교수직이다. 공민왕 이후 成均館으로 개칭되면서 사라졌다(다음 호에 계속). \*